

1992년 2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서명

1993년 2월 16일 발효

이 협약의 당사자는:

북태평양의 소하성어족자원이 주로 캐나다, 일본, 러시아 연방 및 미합중국의 수역에서 기원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원들이 북태평양의 특정한 수역에 혼재함을 인식하며,

소하성어족자원이 기원하는 수역에 위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족자원에 대한 일차적 이익과 책임을 가짐을 인식하고,

소하성어족자원에 대한 어업은 영해의 폭이 측정되어지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만 행하여짐을 인식하며,

소하성어족자원의 모천국이 이러한 자원의 보존·관리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경비를 지출함과 동시에 경제개발의 기회를 포기함을 인식하고,

북태평양의 소하성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태평양의 소하성어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과학적 정보의 획득·분석 및 보급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고,

북태평양의 소하성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기를 희망하며,

북태평양의 소하성어족자원의 보존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효과적인 체제를 설립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약수역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 (이하 “협약수역”이라 한다)은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북위 33°이북의 북태평양과 그 인접수역이다.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목적을 위한 활동은 영해의 폭이 측정 되어지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 수역의 북태평양과 그 인접수역에서 남쪽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양해된다

용어의 정의

제 2 조

이 협약의 목적상,

1. “소하성어류”이라 함은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어족으로서 부속서가에 규정된 소하성어종을 말하되, “소하성어족”이라 함은 그러한 어족의 자원을 말한다.
2. “어류”이라 함은 해양포유류와 바다새를 제외한 물고기·연체류·갑각류 및 모든 형태의 해양동식물을 말한다.
3. “조업”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어류를 어획·포획 또는 수확하거나 어획·포획 또는 수확의 결과를 낚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활동
 - 나.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해상활동.
4. “직접조업”이라 함은 특별한 어종 또는 어족자원을 목표로 하는 조업을 말한다.
5. “부수적포획”이라 함은 어떤 어종 또는 어족자원에 대하여 직접조업을 행하는 동안 다른 어종 또는 어족자원을 어획·포획 또는 수확하는 것을 말한다.
6. “생태학적 관련 종”이라 함은 협약수역에서 발견되는 소하성어족자원과 관련되는 해양생물종을 말하되, 소하성어족자원의 포식자나 피식자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7. “원당사자”라 함은 이 협약의 당사자인 국가로서 제1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제 3 조

보존 조치

1. 협약수역안에서는
 - 가. 소하성어류에 대한 직접조업은 금지된다.
 - 나. 소하성어류에 대한 부수적 포획은 부속서 나에 따라 실행가능한 최대범위까지 최소화되어야 한다.
 - 다. 비소하성어류를 목표로 하는 조업활동의 경우 부수적 포획으로 획득된 소하성어류를 조업선에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며, 그러한 소하성어류는 바다에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7조에 따라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약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포획된 소하성어류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그러한 불법거래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법과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조

집행: 당사국이 아닌 실체 또는 국가

1. 사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의 자국민·거주민 또는 선박에 의한 조업활동이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어족자원의 보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당해 국가나 실체에 주위를 환기시키는데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의 자국민·거주민 또는 선박에 의한 조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국가나 실체가 이 협약의 규정에 합치되는 법령을 채택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협력하도록 할 것을 장려하는데 합의한다.
3.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하에서 등록된 선박들이 이 협약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등록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4. 당사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가 그 자국민·거주민 또는 선박에 의한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어류에 대한 직접조업을 방지하고, 그 부수적 포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법 및 각자의 국내법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협력한다.

제 5 조

집행:
승선 및 검색

1. 각 당사자는 자국민과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들이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협약수역안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 가. 각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하성어류에 대한 목표조업이나 부수적 포획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다른 당사자의 선박에 승선하여 장비·조업일지·서류·어획물 및 그 밖의 물품을 검색하고 승선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그러한 검색과 심문은 그 선박들이 최소한의 간섭과 불편을 받도록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한 공무원은 선박의 선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각자의 정부가 발행한 증표를 제시한다.
 - 나. 어떤 사람이나 선박이 실제로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업에 종사하거나 가목의 공무원이 그 선박에 승선하기 이전에 분명히 조업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그러한 사람이나 선박을 체포·억류할 수 있고 그 주변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그 공무원이 속하여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사람이나 선박이 속하여 있는 당사자에게 그 체포·억류의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며, 양 당사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그러한 사람이나 선박이 속하여 있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이들을 인도한다. 그러나, 그러한 통보를 받은 당사자가 즉각적으로 그 인도를 수락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통보를 행한 당사자는 그러한 사람이나 선박이 속하여 있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인도를 수락할 때까지 협약수역안 또는 이 협약의 다른 당사자와 교신하여 통보한 편리한 항구에서 (동 당사자가 그러한 교신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계속 체포·억류할 수 있다.
 -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당사자가 인도를 수락하는 때에는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공무원은 위반 행위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에 요구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심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행한다. 또한, 그 권한 있는 공무원은 관련 어기의 잔여 기간 동안 당해 사람이나 선박이 더 이상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행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집행공무원의 당해 선박으로의 승선배치, 당해 선박이 허가 받은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당해 선박의 협약수역으로부터의 배제가 포함될 수 있다.

- 라. 위에 규정한 사람이나 선박이 속하여 있는 당사자의 당국만이 그 위반 행위를 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인과 증거는, 그들이 이 협약의 당사자의 통제하에 있는 한, 동 위반 행위의 심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동 당사자의 행정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적절히 이용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재는 제9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자국의 선박이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승선 및 조사를 허용·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며, 향후 행하여 질 수 있는 집행조치에도 협력한다.

제 6 조

집행:
정보의 교환

1. 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협력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포획된 소하성어류과 관련한 집행조치와 그 사건의 처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협력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의 자국민·거주민 및 선박에 의한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어류에 대한 직접조업 및 부수적 포획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데 협력한다.

제 7 조

과학:
연구 및 협력

1. 당사자는 영해의 폭이 측정되어지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북태평양과 그 인접수역에서 소하성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과학적 연구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데 협력한다.

2. 협약수역안에서의 조업이나 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생물통계학적 정보, 어획량·어업노력 통계 및 생물학적 표본을 포함한 어업자료와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수집·보고·교환하는데 협력한다.
3.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어획정보 및 이행정보와 생물학적 표본이나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어족자원이 있는 협약수역에 인접한 수역의 소하성어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한 그 밖의 기술적 자료나 정보와 같은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4. 당사자는 소하성어족자원 (적절한 경우에는 생태학적 관련 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협약수역안에서의 어획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과학옵서버프로그램을 포함한 적절한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 당사자는 세미나·워크숍과 같은 과학교류와 적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자의 교류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당사자는 모든 당사자가 적절한 과학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국민이나 선박에 의하여 수행되는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어류에 대한 직접조업이나 상당한 수준의 부수적 포획과 관련되는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을 연구수행에 충분히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다. 요청당사자를 제외한 모천국인 모든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그 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획과 관련된 조업이 제3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동 계획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한다.
7. 당사자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성어류에 대한 포획이 과학적 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이 협약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협약수역안의 모든 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소하성어류의 어획은 9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소하성어족의
목표 조업 또는
부수적 어획

위원회

제 8 조

1. 이에 따라, 국제기구인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의 목적은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어족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3. 위원회는 협약수역안의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나 당사자의 영토안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당사자의 영토안에서 위원회와 그 직원이 향유하는 면제와 특권은 위원회와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5. 위원회의 본부는 캐나다의 밴쿠버에 위치하거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다.
6. 위원회의 공식언어는 영어·일본어 및 러시아어이다.
7. 각 당사자는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며, 3인 이하의 대표를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다. 동 대표들은 위원회의 회의시 전문가 및 자문위원을 동반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를 설립한다.
9. 위원회는 사무국장 및 적절한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설립한다.
10. 각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가. 모든 중요한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어족자원의 모천국인 모든 당사자의 총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나.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찬성 또는 반대표를 행사하는 모든 당사자의 투표수의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다.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어족자원의 모천국인 어느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된다.
11.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이들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각각 재선이 가능하나, 4년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의장과 부의장은 동일한 당사자의 대표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2. 위원회의 의장은 정기적인 연례회의를 위원회의 본부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지역에서 소집한다.
13. 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1회를 회합하며, 그 시기 및 장소는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한다.
14. 정기적인 연례회의 이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어느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의장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들 두 당사자중 적어도 하나는 원당사자이어야 한다.
15. 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16. 위원회는 재정규칙을 채택한다.

제 9 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어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당사자들에게 권고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활동, 특히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소하성어류의 어획 및 불법거래나 당사자 (적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그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교환을 증진한다.
3.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활동에 상응하는 제재 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4. 이 협약을 위반한 조업의 결과로서 모천국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이 협약을 위반하여 포획될 수 있는 어류의 기원지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5. 제5조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집행활동을 검토·평가하고, 이 협약의 효과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질 추가적 조치를 권고한다.
6. 소하성어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과학자료 (소하성어족자원이 기원하는 지역을 확인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수집·교환·분석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의 활동과 관련된 어획 및 어획노력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증진하고, 그러한 소하성어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당사자간의 협력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7. 소하성어류의 제품이 합법적으로 수획된 어류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 계획의 구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8. 소하성어족자원 (적절한 경우에는 생태학적 관련 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협약수역안의 과학적 연구활동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9.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과학적 권고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10. 적절한 경우에는,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어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존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 또는 실체를 초청한다.
11. 이 협약과 그 부속서의 개정안을 권고한다.
12.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어류에 대한 부수적 포획을 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13.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제 10 조

사무국장 및
사무국

1.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사무국의 업무를 감독한다.
2. 사무국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행한다.
 - 가. 위원회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 나. 이 협약과 관련되는 소하성어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의 수집·배포
 - 다.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한 기능이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능의 수행
3.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채용조건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4.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승인한 채용조건에 따라 그 직원을 임명한다.

제 11 조

재정: 비용,
예산, 분담금 및
회계감사

1. 각 당사자는 자국 대표,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당사자의 분담금으로 지불한다.
2. 위원회는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사무국장은 예산이 검토될 위원회의 회의로부터 늦어도 60일 이전에 분담금 표 및 예산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3. 예산은 당사자간에 균등하게 분담된다.

4. 사무국장은 각 당사자에게 분담금을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위원회 본부가 위치한 국가의 통화로 동 분담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2년을 연속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제8조 제10항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6. 위원회의 재무사항은 위원회가 선정한 외부의 회계감사관에 의하여 매년 감사를 받는다.

개정절차

제 12 조

1. 어떠한 당사자도 부속서를 제외한 이 협약의 개정안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3분의 1 이상이 동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개정안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기탁처는 그러한 회의를 소집한다.
3. 개정안은 기탁처가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받은 때에 발효한다.

부속서

제 13 조

1. 이 협약의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협약에 대한 모든 참고사항들은 부속서 대한 참고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이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어족자원의 모천국인 모든 당사자의 정부가 제9조 제11항에 따라 위원회가 권고한 부속서의 개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이 부속서의 개정안은 위원회가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어족자원의 모천국인 모든 당사자로부터 개정안의 수락통지를 받은 날부터 동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 나. 모천국이 아닌 당사자가 가목에 규정된 날까지 부속서의 개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그 개정안은 가목에 규정된 날에 동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모천국이 아닌 당사자가 가목에 규정된 날 이후에 부속서의 개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동 개정안은 위원회가 동 당사자로부터 개정안의 수락통보를 받은 날부터 동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위원회는 부속서의 개정안의 수락통보에 대한 접수일을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14 조

탈퇴

모든 당사자는 기탁처에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 15 조

부인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해양법과 관련된 문제 또는 당사자가 가입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협약하에서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당해 당사자의 입장이나 견해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기탁처

이 협약의 원본은 기탁처인 러시아연방 정부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다른 모든 서명당사자 및 가입당사자에게 협약의 인증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서명, 비준

1. 이 협약은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어족자원의 주요 모천국인 캐나다·일본·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위 4개 국가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4번째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부터 90일 이후에 발효한다

제 18 조

가입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다른 국가들은 원당사자의 만장일치에 의한 초청에 의하여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동 국가에 대한 이 협약의 효력은 당해 국가의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2월 11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불어·일본어 및 러시아어로 각각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1992년 2월 11일 모스크바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 Michael Richard Bell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 Hiroshi Shigeta

러시아연방 정부를 : Fedor V. Shelov-Kovediaev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 James Franklin Collins

.....

협약, 1993년 2월 16일에 발효

대한민국, 2003년 5월 27일에 협약 가입

가. 종

연어

은연어

홍연어

곱사연어

왕연어

시마연어

무지개송어

나. 부수적 포획

1. 비소하성어류에 대한 어업은 그러한 부수적 포획을 경미한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소하성어류의 부수적 포획을 최소화하는 시기·수역 및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2. 2개 이상의 당사자가 어느 당사자의 자국민이나 선박에 의하여 이 부속서에 위반하여 협약수역에서 어업이 행하여 진다고 믿는 사실을 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통지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에 이를 통보한 당사자들은 그러한 통보의 근거로 삼은 정보를 제출할 책임을 진다. 문제의 조업을 행한 자국민이나 선박이 속한 당사자는 그 어업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동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입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어업은 이 부속서에 부합되게 행하여진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중지된다.